

# 하남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근린공원) 결정 의회 의견 청취(안)

의안 번호	3198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11. .  
제출자 : 하남시장

## 1. 시의회 의견청취 배경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)의 결정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
- 이에 따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을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도시관리 계획(도시계획시설:근린공원)결정(안)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계획의 배경
  -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일부 해제됨에 따라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, 이를 위해 금회 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)을 결정하고자 함.
- 계획의 개요
  - 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) 결정 : 4개소 (A=299,976㎡)

연번	공원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(㎡)	비고(사업시행자)
1	1-2 근린공원(가칭)	근린공원	하남시 광암동 87-1 일원	24,975	본단지복구사업 (LH)
2	2 근린공원(가칭)	근린공원	하남시 춘궁동 131 일원	202,721	본단지복구사업 (HUIC)
3	6 근린공원(가칭)	근린공원	하남시 상산곡동 567-24 일원	35,559	기업이전단지 복구사업 (LH)
4	7 근린공원(가칭)	근린공원	하남시 상산곡동 322번지 일원	36,721	기업이전단지 복구사업 (GH)

- 위치도



○ 사업주체 : 한국토지주택공사, 경기도시주택공사, 하남도시공사

### 3.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근린공원)결정(안)

○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및 사유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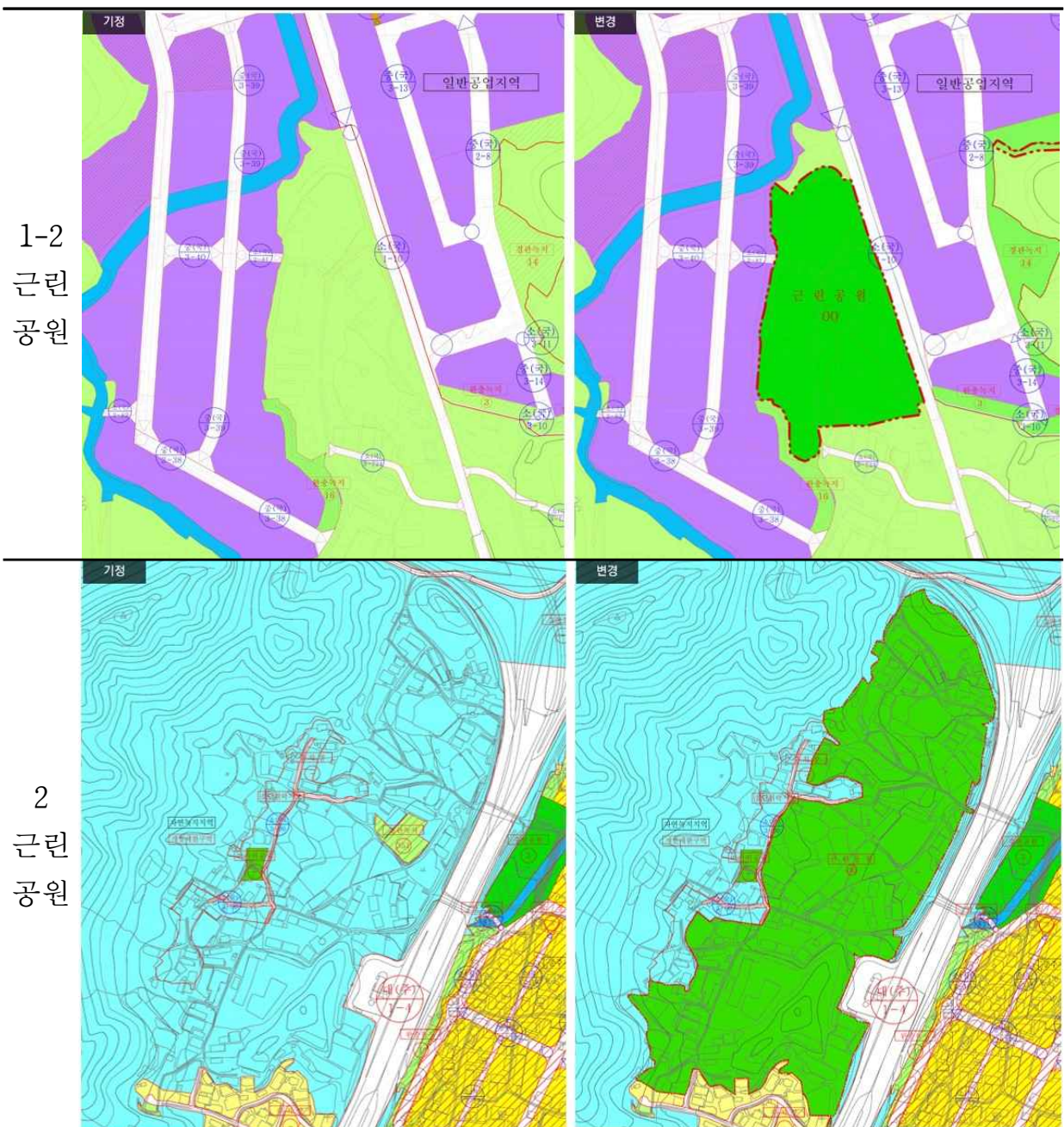
- 공원결정조서

구분	도 표시번호	공원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-	1-2 근린공원 (가칭)	근린공원	하남시 광암동 87-1 일원	-	증)24,975	24,975	-	
신설	-	2 근린공원 (가칭)	근린공원	하남시 춘궁동 131 일원	-	증)202,721	202,721	-	
신설	-	6 근린공원 (가칭)	근린공원	하남시 상산곡동 567-24 일원	-	증)35,559	35,559	-	
신설	-	7 근린공원 (가칭)	근린공원	하남시 상산곡동 322번지 일원	-	증)36,721	36,721	-	

- 공원결정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공원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-	1-2 근린공원 (가칭)	• 근린공원 신설 - 면적: 24,975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」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이 일부 해제됨에 따라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4조 제4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 일환으로 도시관리계획(시설: 근린공원) 결정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함.</li> </ul>
-	2 근린공원 (가칭)	• 근린공원 신설 - 면적 : 202,721㎡	
-	6 근린공원 (가칭)	• 근린공원 신설 - 면적 : 35,559㎡	
-	7 근린공원 (가칭)	• 근린공원 신설 - 면적 : 36,721㎡	

○ 도시계획시설 결정도





#### 4.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

- 2025. 9. : 도시관리계획 결정 (변경)(안) 입안 및 주민의견청취
- 2025. 10. : 관련부서(기관)협의
- 2025. 12. :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
- 2026. 2. :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근린공원) 결정 신청 (市→道)

## 관련 법령 및 조례

###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#### 제28조(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)

- ⑥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⑧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·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.

#### 시행령 제22조(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)

- ⑦ 법 제28조제6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다만,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
  -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. 다만,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(도시·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·군관리계획결정을 말한다.이하같다)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·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- 라. 공원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)

###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
#### 제4조(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의 입안)

- ④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(이하 “해제대상 지역”이라 한다)에 대한 개발계획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해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된 지역(이하 “훼손지”라 한다)의 복구계획 등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

안을 포함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복구하고자 하는 훼손지의 범위는 해제대상 지역 면적[바다·하천·도랑·제방(堤防) 및 도로 등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면적은 제외한다]의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1.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각종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거나 다수 산재되어 녹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곤란한 곳. 이 경우 각종 시설물의 적법 또는 불법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.
- 1의2.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목(地目)의 토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녹지로 복원이 필요한 곳. 이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 유무는 고려하지 아니한다.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으로서는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거나 녹지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원으로 조성이 시급한 곳

#### 시행령 제2조의2(훼손지 복구계획등)

-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훼손된 지역(이하 “훼손지”라 한다)의 복구계획 등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(이하 “훼손지 복구계획등”이라 한다)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훼손지와 주변지역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도록 복구하여 녹지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조정 또는 해제되는 경우의 훼손지 복구계획등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훼손지와 주변지역의 일부는 지역 주민과 도시민의 여가 활용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.